



: 2017-03-28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가합2250 창작자지위부존재확인
원 고 A
피 고 1. B
2. 주식회사 귀뚜라미
변 론 종 결 2016. 6. 30.
판 결 선 고 2017. 1. 1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B는 특허청 디자인 등록번호 C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보일러 등의 제조·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.

나. 원고는 2000. 3. 3.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고, 피고 B는 2007. 1. 3.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계 및 품질 개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. 6. 18. 피고 회사를 퇴사한 자이다.

다.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디자인권(이하 '이 사건 디자인권'이라 한다)을 출원하여 등록하였다.

- 디자인 등록번호 : C
- 출원일자 / 출원번호 / 등록일자 : D / E / F
- 창작자 : A, B
-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: 별지 기재와 같다.

라. 피고 B는 G, H와 함께 2014. 3. 18.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 2376호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고, 현재 위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

피고 B는 이 사건 디자인권의 진정한 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디자인권의 공동창작자로 기재되어 있어, 원고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.



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창작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.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'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창작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법리

확인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,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, 위험이 있고, 그 불안,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(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). 한편,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·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).

나. 판단

직권으로 살피건대, 등록디자인 공보상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공동 창작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,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



들, 즉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의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진정한 창작자에 대해서 다툼이 존재하였던 이상, 그것이 디자인등록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'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혔던 창작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'에 해당하여 창작자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, 창작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진정한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,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원호신

 판사 서희경

 판사 임세준

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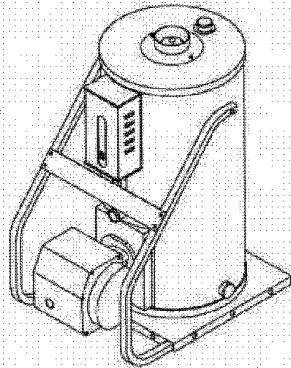
디자인의 설명

1. 제1은 금속 및 합성수지제임.
 2. 본 디자인물품은 보일러 이송시 손잡이 기능을 가지면서 외관이 단순하고 미려한 보강 후려일므로 구성이 되어있음.
 3. 본 디자인물품은 작고 좁은 보일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림한 경사지지대를 연결 및 구성이 특징.
- 참고도 1은 각부명칭을 나타낸 참고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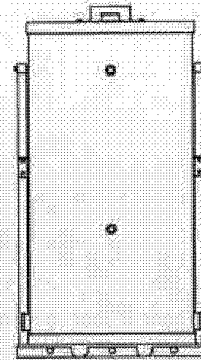
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

'보일러'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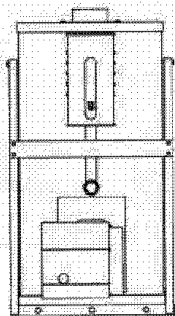
사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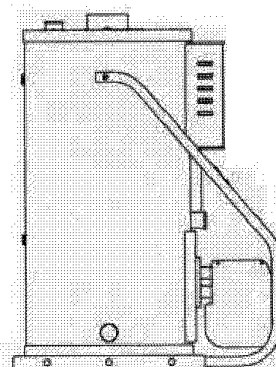
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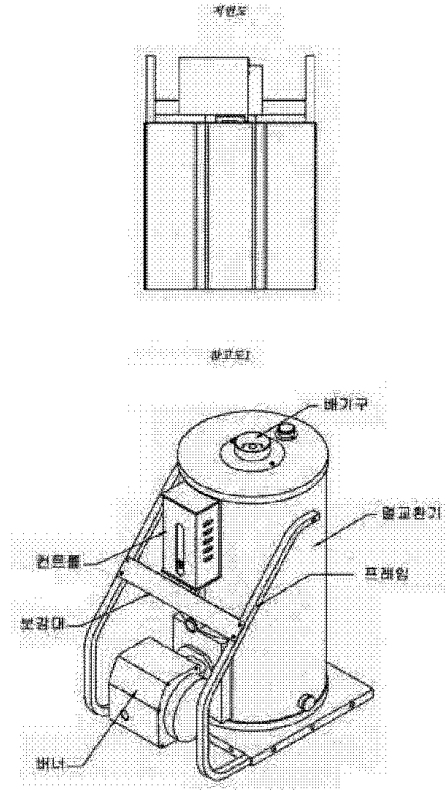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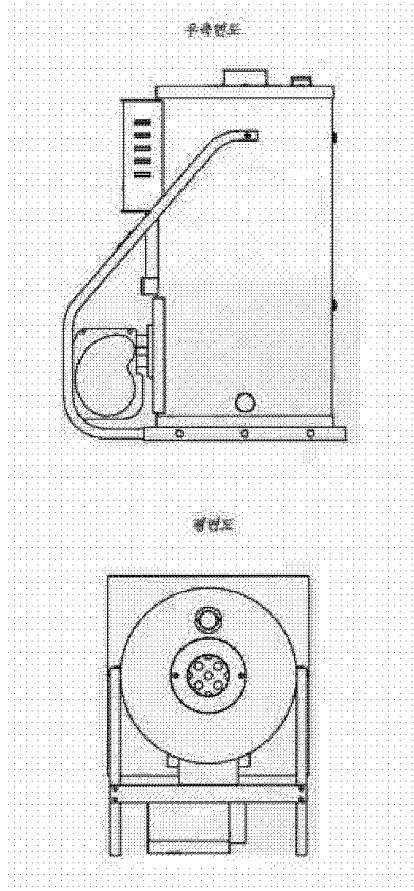


정면도



좌측면도





끝.